

싱가포르협약 이후 일본의 국제분쟁해결절차 활성화 동향: JCAA 중재규칙과 일본 중재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Efforts to Promote International Dispute Resolution under the regime of Singapore Mediation Convention in Japan: From the Perspective of Amendments to JCAA Arbitration Rules and Arbitration Act of Japan

조수혜*

Soo-Hye Cho

〈목 차〉

- I. 들어가며
 - II. 일본의 국제분쟁해결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환경 정비 동향
 - III. 일본상사중재협회(JCAA)의 중재규칙과 조정규칙 개정
 - IV. 일본 중재법 개정에 관한 요강안의 주요내용
 - V. 시사점 및 결론
- 참고문헌
Abstract

주제어 : 국제중재, 국제조정, 일본중재법 개정, JCAA 신속중재절차, JCAA 인터랙티브 중재규칙

* 전주대학교 법학과 조교수(scho32@gmail.com)

I. 들어가며

2018년 국제조정화해합의협약(이하 ‘싱가포르협약’이라 한다)¹⁾의 채택과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이하 ‘UNCITRAL’이라 한다)의 국제상사조정 및 국제조정화해합의협약에 관한 모델법(이하 ‘모델조정법’이라 한다)의 개정²⁾ 이후, 국제상사조정에도 국제상사중재와 마찬가지로 국제적인 기준이 마련되고 집행이 보장되게 되었다. 전통적으로 국제상거래분쟁에서는 법정지의 편향성, 집행지에서의 외국판결의 집행문제, 분쟁에서의 비밀보호, 신속성 등을 이유로 국제상사중재가 소송을 대체하는 분쟁해결방식으로 이용됐다.³⁾ 그러나 국제상사중재가 소송화가 되면서 비용이 증가하고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그 대안으로 당사자 간의 자발적인 합의를 존중하고 유연한 절차로 진행되는 조정이 주목을 받게 되었다.⁴⁾ 그간 조정은 중재와 달리 집행방안이 보장되지 않아 조정절차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존재하였으나, 이러한 지적은 싱가포르협약으로 집행력이 보장됨에 따라 문제가 해소되었다.

이러한 국제상사분쟁에서의 조정의 활성화와 더불어, 전통적인 국제상사분쟁의 해결방안인 중재가 분쟁해결절차로서 그 위상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관찰이 필요한 상태이다.⁵⁾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는 국제상사분쟁의 해결을 유치하기 위하여 중재와 조정을 모두 활성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싱가포르, 홍콩 등은 적극적으로 국제상사분쟁해결지로서 위상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⁶⁾ 우리나라도 국제상사분쟁해결을 유치하기 위한 일련의 움직임을 보인다. 우리나라는 1966년 중재법을 제정하고 1973년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이하 ‘뉴욕협약’이라 한다)⁷⁾에 가입하면서

-
- 1)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Settlement Agreements Resulting from Mediation, A/RES/73/198, available at https://uncitral.un.org/sites/uncitral.un.org/files/media-documents/EN/Texts/UNCITRAL/Arbitration/mediation_convention_v1900316_eng.pdf
 - 2)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Mediation and International Settlement Agreements Resulting from Mediation, 2018, A/RES/73/199, available at https://uncitral.un.org/sites/uncitral.un.org/files/media-documents/uncitral/en/annex_ii.pdf
 - 3) Christina G. Hioureas, *The Singapor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Settlement Agreements Resulting from Mediation: A New Way Forward?*, 37 Berkeley J. Int'l L. 215, 219 (2019).
 - 4) Brian A. Pappas, *Med-Arb and the Legalization of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20 Harv. Negot. L. Rev. 157, 162 (2015)
 - 5) 中林 啓一, “싱가포르 조정법과 국제사법”, *修道法學* 43卷 2号, 340頁 (2021).
 - 6) 함영주, “싱가포르 조정제도의 현황과 시사점”, 『중앙법학』 제13집 제3호(2011. 9.), 149면 참조; 齋藤 彰, “JCAA의商事調停規則改正とその背景”, 『JCAジャーナル』 67卷 4号 (2020. 4.), 12頁.
 - 7)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June 10, 1958, available at <https://www.newyorkconvention.org/11165/web/files/original/1/5/15432.pdf>

중재법을 개정하고⁸⁾, 1985년 채택된 UNCITRAL 모델중재법을 수용하여 1999년 중재법을 전부개정⁹⁾하고, 최근에는 2016년에 2006년 개정된 UNCITRAL 모델중재법(이하 ‘2006년 모델중재법’이라 한다)¹⁰⁾을 수용하여 중재법을 개정¹¹⁾하는 등 적극적으로 국제기준을 수용,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중재법제도를 갖추어왔다. 한편, 조정에 있어서도 2019. 8. 싱가포르협약에 서명하고¹²⁾ 싱가포르협약의 적용을 받는 조정절차를 통하여 당사자 간에 도출한 합의를 집행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기 위하여 법무부가 ‘싱가포르 조정협약 이행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는¹³⁾ 등 조정제도에서도 국제기준에 상응하는 법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최근 국제분쟁해결지로서의 위상을 향상하기 위하여 국제중재와 국제조정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¹⁴⁾ 싱가포르협약의 경우, 일본 국내법으로 조정을 통하여 도출한 당사자 간의 합의에는 집행력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서명하지는 않았으나, 싱가포르협약의 발효 이후 변화된 국제조정환경을 염두에 두고 장기적으로 싱가포르협약 가입을 검토하고 있다. 싱가포르협약이 성립한 이후 일본에서도 국제상사분쟁을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2018. 2. 일본국제분쟁해결센터(日本國際紛争解決センター, Japan International Dispute Resolution Center, 이하 ‘JIDRC’라 한다)가 국제중재 심리에 필요한 기능을 구비한 센터를 2018. 5. 오사카에 설립하고, 이어서 2020. 3. 동경에도 설립하는 등¹⁵⁾ 국제상사중재와 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국제상사분쟁해결기관의 설립 외에 법제도 정비를 위하여 일본은 2020. 외국변호사에 의한 법률사무의 취급에 관한 특별조치법(外國弁護士による法律事務の取扱いに關する特別措置法, 昭和六十一年 法律第六十六号, 이하 ‘외국변호사법’이라 한다)을 개정하여 국제중재에서 외국변호사가 대리할 수 있는 업무의 폭을 넓혔다.¹⁶⁾

한편, 중재절차에 대한 법제 또는 규칙 차원에서 일본상사중재협회(日本商事仲裁協會,

8) 1973. 2. 17. 법률 제 2537호, 일부개정.

9) 1999. 12. 31. 법률 제6083호, 전부개정.

10) UNCITRAL,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1985), with Amendments as adopted in 2006, https://uncitral.un.org/en/texts/arbitration/modellaw/commercial_arbitration (2022. 4. 4. 최종방문)

11) 2016. 5. 29. 법률 제14176호, 일부개정.

12)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대한민국 정부 싱가포르 조정협약 서명 (2019. 8. 7. 법무부),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44748> (2022. 4. 4. 최종방문).

13) 법무부, 보도자료, 중소기업 국제거래 분쟁해결에 힘이 되는 신속·저비용 절차 도입 추진 - 법무부, 싱가포르조정협약 이행법률 제정 T/F 발족 - (2021. 3. 10.), https://www.moj.go.kr/moj/221/subview.do;jsessionid=xYjENcaAPV2CoYW7273rx47Br34l-Wh4F9RY_Xta.wizard-10-5cpfg?enc=Zm5jdDF8QEB8JTJGYmJzJTJGbw9qJTJGMTgyJTJGNTQ0NTI2JTJGYXJ0Y2xWaWV3LmRvJTNG (2022. 4. 4. 최종방문).

14) 關戸 麥, わかりやすい國際仲裁の實務, 商事法務(別冊 NBL/No. 167), 2019, 194頁.

15) 古田 啓昌, “國際仲裁・國際調停の最新動向”, Dispute Resolution Group Newsletter, Anderson, Mori & Tomotsune, at *2 (2020. 10.)

16) E-GOV 法令檢索, 外國弁護士による法律事務の取扱いに關する特別措置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令和二年法律第三十三号), https://elaws.e-gov.go.jp/document?lawid=361AC0000000066_20200829_502AC0000000033 (2022. 4. 4. 최종방문).

Japan Commercial Arbitration Association, 이하 ‘JCAA’라 한다)는 2019년 인터랙티브(interactive) 중재규칙과 신속중재절차를 마련하고 2021년 신속중재절차를 강화하는 규칙 개정을 하고, 2020년에는 상사조정규칙을 마련하여 국제중재 및 국제조정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국제중재 활성화를 위하여 2006년 모델중재법을 반영한 중재법 개정 준비에 착수하였다. 공익사단법인 상사법무연구회의 ‘중재법제의 검토를 중심으로 한 연구회’는 2020. 7. 중재법 개정을 위한 보고서(이하 ‘연구회 보고서’라 한다)를 공표하였고,¹⁷⁾ 이를 토대로 일본 법무성은 2021. 3. 5. 중재법개정에 관한 중간시안(仲裁法等の改正に關する中間試案, 이하 ‘중간시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였다.¹⁸⁾ 이 중간시안은 UNCITRAL 중재모델법을 수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협약을 염두에 두고 국제상사조정의 집행에 대한 부분도 포함하였으나,¹⁹⁾ 의견 수렴 후 수정·공표된 중재법 개정에 관한 요강안(仲裁法の改正に關する要綱案, 이하 ‘요강안’이라 한다)²⁰⁾에는 중재절차에 대한 부분만 담고 있고 조정에 관한 부분이 제외되었다.²¹⁾ 이 논문에서는 일본 국제상사중재 및 조정의 활성화 노력과 JCAA의 개정된 중재규칙과 조정규칙을 살펴보고, 중재법 개정에 관한 요강안에 제시된 주요내용을 분석하여, 싱가포르협약 이후 변화된 국제상사분쟁해결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II. 일본의 국제분쟁해결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환경 정비 동향

1. 국제중재 및 조정의 활성화를 위한 일본의 논의

국제중재는 중재판정의 집행력과 중재절차의 비공개성, 사법의 무결성(integrity)에 문제

- 17) 公益社団法人 商事法務研究會, 仲裁法制の見直しを中心とした研究會報告書, <https://www.shojihomu.or.jp/documents/10448/10662584/%E4%BB%B2%E8%A3%81%E6%B3%95%E5%88%B6%E3%81%AE%E8%A6%8B%E7%9B%B4%E3%81%97%E3%82%92%E4%B8%AD%E5%BF%83%E3%81%A8%E3%81%97%E3%81%9F%E7%A0%94%E7%A9%B6%E4%BC%9A%E5%A0%B1%E5%91%8A%E6%9B%B8.pdf/5d80fe0b-b627-46b1-95b3-b70ec6f7ec9b> (2022. 4. 24. 최종방문).
- 18) 法務省, 「仲裁法等の改正に關する中間試案」(令和3年3月5日)の取りまとめ, https://www.moj.go.jp/shingi1/shingi04900001_00056.html (2022. 3. 11. 최종방문).
- 19) 法務省民事局參事官室, 仲裁法等の改正に關する中間試案の補足説明, <https://www.moj.go.jp/content/001344410.pdf>
- 20) 法務省, 法制審議會第192回會議配布資料, 仲裁法の改正に關する要綱案, <https://www.moj.go.jp/content/001358284.pdf> (2022. 3. 11. 최종방문).
- 21) 중간시안에서 조정에 관한 부분은 2022. 2. 4. 조정에 의한 화해합의에 집행력을 부여하는 제도의 창설 등에 관한 요강안(調停による和解合意に執行力を付与し得る制度の創設等に關する要綱案(令和4年2月4日決定))으로 별도로 공표되었다. 法務省, 法制審議會-仲裁法制部會, https://www.moj.go.jp/shingi1/housei02_003006.html (2022. 4. 28. 최종방문).

가 있는 국가의 사법제도 이용의 회피 등의 이유로 세계적으로 그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싱가포르와 같이 국제중재 활성화에 적극적인 나라의 경우 국제중재건수가 최근 10년간 4 배 이상 증가한 반면, 일본에서 국제중재 이용은 매우 저조하다.²²⁾ 싱가포르가 국제분쟁 해결지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하여 싱가포르협약을 주도하고, 우리나라도 2006년 모델 중재법 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등 국제분쟁해결지로서 위상을 높이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일본 역시 일본을 중재지로 하는 국제중재를 활발하기 위한 노력을 개시하였다.²³⁾ 국제중재는 민간이 주체가 되는 분쟁해결절차이므로 중재판정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면서 국제중재 활성화를 위한 기반정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정부차원에서 국제중재기반을 확립하기 위하여 2017. 6. 각의결정한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2017(經濟財政運営と改革の基本方針2017)’²⁴⁾을 토대로 JIDRC 등 중재전용 심리시설 및 설비를 충실히 하고, 외국변호사법 개정으로 외국변호사의 일본에서의 국제중재대리 범위를 확대하고, 일본의 중재전문가의 양성 등의 작업에 착수하였다.²⁵⁾ 이를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중재법 개정작업에도 착수하여 2006년 모델중재법을 수용하여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일련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²⁶⁾

2. 국제중재기관과 국제조정기관의 설립

일본의 중재기관으로 1950년에 설립된 JCAA²⁷⁾ 외에도 일본해운집회소(Japan Shipping Exchange, In.), 일본지적재산중재센터(Japan Intellectual Property Arbitration Center, JIPAC), 일본스포츠중재기구, 일본중재인협회(Japan Association of Arbitrators, JAA) 등이 존재한다.²⁸⁾ 그러나 대표적인 상사중재기관인 JCAA의 경우에도 후술하는 바와 같이 국제중재규

22) 内閣官房, 國際仲裁の活性化に向けた關係府省連絡會議幹事會(第14回), 國際仲裁の活性化に向けて考えられる施策, https://www.cas.go.jp/jp/seisaku/kokusai_chusai/kanjikai/dai14/gijisidai.pdf (2022. 3. 24. 최종방문).

23) ゾンデルホフ&アインゼル法律特許事務所, 法務: 仲裁法改正に向けた動き~仲裁法改正要綱の答申 <https://se1910.com/ja/%E6%B3%95%E5%8B%99%EF%BC%9A%E4%BB%B2%E8%A3%81%E6%B3%95%E6%94%B9%E6%AD%A3%E3%81%AB%E5%90%91%E3%81%91%E3%81%9F%E5%8B%95%E3%81%8D%EF%BD%9E%E4%BB%B2%E8%A3%81%E6%B3%95%E6%94%B9%E6%AD%A3%E8%A6%81%E7%B6%B1/> (2022. 3. 12. 최종방문).

24) 内閣府, 經濟財政運営と改革の基本方針2017, <https://www5.cao.go.jp/keizai-shimon/kaigi/cabinet/2017/decision0609.html> (2022. 3. 12. 최종방문).

25) ゾンデルホフ&アインゼル法律特許事務所, 法務: 仲裁法改正に向けた動き~仲裁法改正要綱の答申 <https://se1910.com/ja/%E6%B3%95%E5%8B%99%EF%BC%9A%E4%BB%B2%E8%A3%81%E6%B3%95%E6%94%B9%E6%AD%A3%E3%81%AB%E5%90%91%E3%81%91%E3%81%9F%E5%8B%95%E3%81%8D%EF%BD%9E%E4%BB%B2%E8%A3%81%E6%B3%95%E6%94%B9%E6%AD%A3%E8%A6%81%E7%B6%B1/> (2022. 3. 12. 최종방문).

26) Id; 内閣官房, 國際仲裁の活性化に向けた關係府省連絡會議幹事會(第14回), 國際仲裁の活性化に向けて考えられる施策, https://www.cas.go.jp/jp/seisaku/kokusai_chusai/kanjikai/dai14/gijisidai.pdf (2022. 3. 24. 최종방문).

27) JCAA, JCAAについて, 沿革, <https://www.jcaa.or.jp/about/outline.html> (2022. 4. 4. 최종방문).

28) 김영주, “2019년 일본상사중재협회(JCAA) 중재제도의 개혁동향, 중재연구 제29권 제2호(2019) ,134면; 法務省, 國際仲裁の活性化に向けた政府の取組について, https://www.moj.go.jp/kokusai/kokusai03_00003.html (2022.

칙을 개정하는 등 국제사건 유치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재사건 처리건수가 2016년에서 2020년까지 72건에 불과하다.²⁹⁾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일본은 법무성과 경제산업성을 사무국으로 하는 ‘국제중재의 활성화를 위한 관계부처연락회의’를 설립하고, 이 회의에서 검토한 시책에 의하여 국제중재 및 조정의 활성화를 위하여 일본이 중재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중재·조정심리시설의 운영, 중재인·조정인 등 전문인재의 육성, 국내외 기업, 법률가에 대한 홍보활동 등을 하기 위하여 JIDRC를 2018. 2. 설립하였다.³⁰⁾ JIDRC는 국제중재 심문에 필요한 기능을 구비한 센터를 2018. 5. 오사카에 설립하고, 이어서 2020. 3. 도쿄에도 설립하였다.³¹⁾

한편, 국제조정 촉진을 위하여 일본중재인협회는 2018. 11. 일본 최초의 국제조정전문시설을 보유한 상설국제조정기구인 교토국제조정센터(Japan International Mediation Center - Kyoto, 이하 ‘JIMC’라 한다)를 설립하였다.³²⁾ 이는 조정 친화적인 일본문화의 중심으로 볼 수 있는 교토에 충실한 조정설비와 국제기준을 충족하는 국제조정규칙을 갖추고, 국제적 다양성과 전문성을 갖춘 조정인명부를 마련하고 국내외의 다양한 국제분쟁해결기구와의 협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³³⁾ JIDRC와 JIMC는 모두 일본정부와 민간이 협력한 결과 설립한 기관으로 일본의 국제중재 및 국제조정 촉진 움직임의 결실이라고 볼 수 있다.³⁴⁾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도 국제중재 활성화 움직임이 나타났으며, 일본은 내각총리대신을 본부장으로 하는 지적재산전략본부를 설치하고, 지적재산전략본부는 2017. 5. 16. ‘지적재산추진계획2017’를 공표하였다.³⁵⁾ 위 계획의 내용 중 하나는 지적재산분쟁 등 증가하는 국제기업분쟁의 해결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본에서의 국제중재활성화 방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계획에 의하여 도쿄국제지적재산중재센터(東京國際知的財産仲裁センター, 이하 ‘IACT’라 한다)가 설립되었다.³⁶⁾ IACT는 국제분쟁의 1회적 해결, 지적재산권분쟁 권위자로 구성된 중재인 명단, 중재판정에 대한 항소심 패널의 설치로 중재판정의 보편성과 객관성 확보, 심리기간을 1년 이내로 하여 신속·효율적인 절차를 특징으로 한다.³⁷⁾

4. 9. 최종방문).

29) JCAA, 申立件數, <https://www.jcaa.or.jp/arbitration/statistics.html> (2022. 4. 5. 최종방문).

30) 關戸 麥, わかりやすい國際仲裁の實務, 商事法務(別冊 NBL/No. 167), 2019, 194頁; JIDRC, JIDRCとは, <https://idrc.jp/> (2022. 4. 5. 최종방문); 法務省, 國際仲裁の活性化に向けた取組について, https://www.moj.go.jp/kokusai/kokusai03_00003.html (2022. 4. 9. 최종방문).

31) 古田 啓昌, “國際仲裁・國際調停の最新動向”, Dispute Resolution Group Newsletter, Anderson, Mori & Tomotsune, at *2 (2020. 10.). 이 중 오사카 센터는 2021. 4. 시설이전하였다. JIDRC, 大阪施設, <https://idrc.jp/> (2022. 4. 5. 최종방문).

32) JIMC-Kyoto, 京都國際調停センターについて, <https://www.jimc-kyoto-jpn.jp/about2/index.php> (2022. 4. 5. 최종방문).

33) 岡田春夫, ODR 推進検討會 -ADRを巡る近年の國際的動向について-, (2020. 10. 28.), <https://www.moj.go.jp/content/001334620.pdf>

34) 關戸 麥, わかりやすい國際仲裁の實務, 商事法務(別冊 NBL/No. 167), 2019, 194頁.

35) Id.

36) Id; IACT, About, <https://www.iactokyo.com/> (2022. 4. 14. 최종방문).

3. 외국변호사법의 개정

일본 변호사법(弁護士法, 昭和24年 法律第205号) 제72조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보수를 얻을 목적으로 소송사건, 비송사건, 심사청구 등 행정청에 대한 불복신청사건, 그 외 일반 법률사건에 관한 감정, 대리, 중재, 화해, 기타 법률사무를 하는 것은 다른 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77조 제3항에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³⁸⁾ 그러므로 일본 법원에서의 대리인 자격은 일본 변호사로 한정되고, 법원 절차가 아닌 조정이나 중재의 경우 사실상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중재인·조정인이 되거나 대리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중재, 화해 등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있으면 허용이 될 수 있으며, 재판외분쟁 해결절차의 이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裁判外紛争解決手続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平成十六年法律第百五十一号, 이하 ‘ADR촉진법’이라 한다) 제28조는 동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분쟁해결사업자와 조정인·중재인 등은 분쟁 당사자 이외의 자와의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증분쟁해결절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보수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³⁹⁾ 즉, ADR촉진법에 의하여 인증받은 기관에서는 일본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중재인·조정인이 될 수 있다.⁴⁰⁾ 실제로 일본의 중재실무에서 외국변호사 등 일본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중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다.⁴¹⁾

그러나 위와 같은 엄격한 변호사법 규정은 일본에서의 국제중재 활성화의 걸림돌이 된다고 보아 일본 법무성은 외국변호사법⁴²⁾에 대한 개정을 시도하였다.⁴³⁾ 그 결과 국제중재·조정 활성화를 위하여 일본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 변호사들이 국제중재·조정에서 대리인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한 외국변호사법 개정안은 2020. 5. 22. 중의원 본회의에서 통과하여, 동년 5. 29. 공포, 동년 8. 29. 시행되었다.⁴⁴⁾

2020. 8. 시행된 외국변호사법⁴⁵⁾은 일본 법무대신의 승인 또는 일본변호사연합회의 명

37) Id, 195.

38) E-GOV 法令検索, 弁護士法(昭和二十四年法律第二百五号), <https://elaws.e-gov.go.jp/document?lawid=324AC1000000205>

39) E-GOV 法令検索, 裁判外紛争解決手続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平成十六年法律第百五十一号), https://elaws.e-gov.go.jp/document?lawid=416AC0000000151_20200401_429AC00000000045

40) Kakiuchi, supra note 101, at 381.

41) JIDRC, 日本の中裁関連法概要 3. 仲裁代理・仲裁人法制, <https://jidrc.jp/>

42) E-GOV 法令検索, 外國弁護士による法律事務の取扱いに関する特別措置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令和二年法律第三十三号), https://elaws.e-gov.go.jp/document?lawid=361AC0000000066_20200829_502AC0000000033 (2022. 4. 4. 최종방문); 岡田春夫, ODR 推進検討會 -ADRを巡る近年の國際的動向について-, (2020. 10. 28.), <https://www.moj.go.jp/content/001334620.pdf>

43) 法務省, 國際仲裁の活性化に向けた政府の取組について, https://www.moj.go.jp/kokusai/kokusai03_00003.html (2022. 4. 9. 최종방문).

44) 法務省, 外國弁護士による法律事務の取扱いに関する特別措置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令和2年法律第33号)について, https://www.moj.go.jp/housei/gaiben/housei07_00002.html (2022. 4. 9. 최종방문).

45) E-GOV 法令検索, 外國弁護士による法律事務の取扱いに関する特別措置法(昭和六十一年法律第六十六号), https://elaws.e-gov.go.jp/document?lawid=361AC0000000066_20200829_502AC00000000033

부등록을 받은 외국법률사무변호사의 자격을 가지는 자(제5조의3), 또는 그 외의 외국변호사로 외국에서 그 자격을 기초로 하여 법률사무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당해 국제중재사건 또는 국제조정사건을 그 외국에서 수입한 자(제58조의 2)의 경우 국제중재사건 또는 국제조정사건의 절차를 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즉, 일본을 중재지로 하는 국제중재의 경우 외국 변호사는 중재절차에서 대리인이 될 수 있다. 위 외국변호사법 개정은 국제중재 외에 국제조정에서의 대리를 포함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국제상사조정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⁴⁶⁾

4. 싱가포르협약의 가입 검토

일본은 현재 싱가포르협약 비서명국이나, 일본 법무성과 일본변호사연합회는 싱가포르협약 서명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⁴⁷⁾ 일본 법무성은 싱가포르협약의 각국의 체결 현황과 싱가포르협약 이행법률제정 상황을 주시하면서 일본 국내법상 집행력이 부여되지 않았던 당사자 간 화해합의에 대하여 집행력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지속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⁴⁸⁾ 일본 법무성은 관련자료에서 싱가포르조정협약 가입을 대비하여 검토가 필요한 법조문으로 집행권원의 종류에 대하여 규정한 일본 민사집행법 제22조, 화해조서 등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한다고 규정한 일본 민사소송법 제267조 등을 제시하였다.⁴⁹⁾

그러나 국제상사조정을 통하여 성립한 당사자 간 합의에 집행력을 부여하는 싱가포르협약에 가입하기 위한 전제로, 조정의 효력, 특히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았던 당사자 간의 민법상 화해합의와 민간 ADR 기관에서의 조정에 대한 법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⁵⁰⁾고 보아 싱가포르협약 가입에 대하여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는 입장도 있다. 미국 주도로 이루어진 싱가포르협약이 상정하는 조정합의의 효력에 대한 인식은 영미법계 법리를 반영한 것으로, 대륙법계 계약법 체계와 충돌한다는 점이 가장 큰 근거이다.⁵¹⁾ 싱가포르협약이 전제로 하는 협상이론을 바탕으로 한 교섭적 조정제도(negotiated mediation)는 1980년대 이후 영미법계 법률가들이 발전시킨 것으로 여전히 발전 중인 영역이며, 중재와 달리 충분히 연구되어 정착한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싱가포르협약이 뉴욕협약

46) JIMC-Kyoto, International Mediation in Japan - Establishment of JIMC-Kyoto and Other Latest Developments, at *18 (March 11, 2021), <http://www.moj.go.jp/content/001343892.pdf>

47) BakerMcKenzie, Client Alert-International Mediation Update: Japan, (2020. 10. 29.), https://www.bakermckenzie.co.jp/wp/wp-content/uploads/20201029_ClientAlert_DisputeResolution_E.pdf

48) 法務省, 調停に關するシンガポール條約, <https://www.moj.go.jp/content/001332367.pdf> (2022. 4. 14. 최종방문).

49) Id.

50) 秦 公正, 싱가포르調停條約の成立と日本の條約批准を見据えて, <https://yab.yomiuri.co.jp/adv/chuo/research/20210422.php> (2021. 9. 14. 최종방문).

51) 齋藤彰, “シンガポール條約の加盟に向けた日本の課題”, 『國際商取引學會年報』 22号 106頁 (2020)

과 같이 세계적으로 성공할지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는 점,⁵²⁾ 일본 내에서 국제상사조정이 활성화되지 않은 점 등도 싱가포르협약 가입 신중론의 근거로 제시된다.⁵³⁾

Ⅲ. 일본상사중재협회(JCAA)의 중재규칙과 조정규칙 개정

1. JCAA 중재규칙의 개정 동향

JCAA는 세계 각국의 국제중재기관과 비교하여 국제사건 취급건수가 적으며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국제상사중재 활성화를 위하여 2021년에 17건의 국내외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⁵⁴⁾ 국제중재인 또는 국제조정인 풀의 확보나 시설·환경적 뒷받침 등 장기적인 계획과 제도적인 부분의 개선 외에도, JCAA는 국제조정과 국제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재절차를 국제적 수준에 합치시키고 절차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재규칙 및 조정규칙을 개정하였다. 한편, 국제중재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일본 내에서 중재의 이용건수가 증가하여야하고, 이를 위하여 중재의 신속성 등의 장점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고려에 의하여 JCAA는 2019년 상사중재규칙을 개정하고 인터랙티브 중재규칙을 도입하였다.⁵⁵⁾ 이에 그치지 않고 JCAA는 2021년 신속중재절차를 강화하며 상사중재규칙 및 인터랙티브 중재규칙을 개정하고, 중재인선임규칙을 제정하였다.⁵⁶⁾ 현재 JCAA 중재를 이용하는 경우 ①2010년 UNCITRAL 중재규칙 및 2021년 UNCITRAL 중재관리규칙, ②JCAA 상사중재규칙(商事仲裁規則), ③JCAA 인터랙티브 중재규칙(インタラクティブ仲裁規則) 중에서 중재규칙을 선택할 수 있으며, 중재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임의 중재(ad hoc arbitration)나 기타 중재기관의 중재를 이용하면서 중재인 선정을 JCAA에 위탁할 것을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중재인선임규칙(仲裁人選任規則)을 이용할 수 있다.⁵⁷⁾

52) Id.

53) Id., 107頁.

54) 內閣官房, 國際仲裁の活性化に向けた關係府省連絡會議幹事會(第14回), 國際仲裁活性化に向けた経産省・JCAAの最近の取組, https://www.cas.go.jp/jp/seisaku/kokusai_chusai/kanjikai/dai14/gijisidai.pdf (2022. 3. 11. 최종방문).

55) 2019년 JCAA 상사중재규칙 개정과 일본의 국제중재활성화 움직임에 대한 국내 문헌으로 김영주, 앞의 글; 전병서, 앞의 글 참조.

56) JCAA, 仲裁規則, <https://www.jcaa.or.jp/arbitration/rules.html> (2022. 4. 9. 최종방문); JCAA, 仲裁規則の改正及び仲裁人選任規則の制定について(2022年 7月 1日 施行), https://www.jcaa.or.jp/files/news_attach/detail_attach0000201-27.pdf (2022. 4. 29. 최종방문); 內閣官房, 國際仲裁の活性化に向けた關係府省連絡會議幹事會(第14回), 國際仲裁活性化に向けた経産省・JCAAの最近の取組, https://www.cas.go.jp/jp/seisaku/kokusai_chusai/kanjikai/dai14/gijisidai.pdf (2022. 3. 24. 최종방문).

2. JCAA 중재규칙 중 신속중재절차와 인터랙티브 중재규칙의 주요내용

(1) 신속중재절차

2021. 7. 1.부터 시행된 2021년 JCAA 상사중재규칙⁵⁸⁾의 주요 특징은 분쟁금액 3억 엔 이하의 사건에 대한 신속중재절차, 긴급중재인에 의한 임시적 처분(保全措置命令), 복수 계약에서 발생한 분쟁을 하나의 중재절차로 해결하는 일회적 중재, 다수당사자가 관여하는 분쟁을 하나의 중재절차로 해결하는 다수당사자중재, 중재절차 중 조정의 이용, 중재인의 보조자 활용에 관한 규정 등의 마련이다.⁵⁹⁾ 이 중에서도 국제중재활성화 관점에서 특기할 점은 신속중재절차로서, 2019년 상사중재규칙 등의 개정으로 도입된 신속중재절차는 2021년에 다시 개정되면서 신속중재절차가 강화되었고, 이에 따라 신속중재절차에 관한 상사중재규칙 조항과 인터랙티브 중재규칙 조항이 개정되었다.⁶⁰⁾

신속중재절차는 UNCITRAL 중재규칙에 없는 절차로, 신속한 분쟁해결을 지향하며, 중재절차 중에 양 당사자가 화해를 희망하는 경우 조정절차로 이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정비한 점이 특징이다.⁶¹⁾ 과거 10년간 JCAA 중재의 평균 심리기간은 약 12.8개월이었으나, 신속중재절차를 이용하는 경우 평균 심리기간은 3.5개월로 상당히 단축되었다.⁶²⁾ 이에 신속중재절차를 강화하고자 2021년 규칙 개정을 통하여 신속중재절차 이용 대상을 분쟁가액 5,000만 엔 미만의 사건에서 분쟁가액 3억 엔 이하의 사건으로 확대하였고, 다만 당사자가 신속중재절차 이용에 합의한 경우 외에는 JCAA가 신속중재절차를 적용하지 않는데 대한 결정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⁶³⁾ 신속중재절차의 심리는 당사자 의견을 들은 후 심문이 필요하다고 중재판정부가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고,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때로부터 6개월, 다만 분쟁가액이 5,000만 엔 이하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중재판정을 하도록 하였고, 심리기간의 연장은 중재판정부가 아닌 JCAA가 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다.⁶⁴⁾

57) JCAA, 仲裁規則, <https://www.jcaa.or.jp/arbitration/rules.html> (2022. 4. 28. 최종방문).

58) JCCA, Commercial Arbitration Rules 2021, https://www.jcaa.or.jp/common/pdf/arbitration/Commercial_Arbitration_Rules2021_en.pdf?211223 (2022. 4. 9. 최종방문).

59) JCAA, 仲裁規則, <https://www.jcaa.or.jp/arbitration/rules.html> (2022. 4. 9. 최종방문).

60) JCAA, JCAA 仲裁規則の改正及び制定について (2021年7月1日施行), <https://www.jcaa.or.jp/news/?mode=show&seq=201> (2022. 4. 29. 최종방문).

61) 内閣官房, 國際仲裁の活性化に向けた關係府省連絡會議幹事會 (第14回), 國際仲裁活性化に向けた経産省・JCAAの最近の取組, https://www.cas.go.jp/jp/seisaku/kokusai_chusai/kanjikai/dai14/gijisidai.pdf (2022. 3. 24. 최종방문).

62) JCAA, 仲裁規則の改正及び仲裁人選任規則の制定について(2022年 7月 1日 施行), https://www.jcaa.or.jp/files/news_attach/detail_attach00000201-27.pdf (2022. 4. 29. 최종방문).

63) Id.

64) Id.

(2) 인터랙티브 중재규칙

1) 개요

인터랙티브 중재규칙⁶⁵⁾은 2021년 JCAA 중재규칙 개정에서는 신속중재절차 개정으로 인한 부분개정만 이루어졌을 뿐 주요내용은 2019년 인터랙티브 중재규칙의 내용을 유지하고 있다. JCAA가 2019년 새롭게 도입한 인터랙티브 중재규칙은 JCAA 중재의 특유한 규칙으로, 중재인과 당사자의 밀접한 정보교환을 통하여 중재절차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⁶⁶⁾ 이는 비교법적으로 유례가 없는 중재절차로서,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보통법계 중재인과 대리인에 의한 중재절차의 장기화에 대한 대안으로 도입되었다.⁶⁷⁾ 중재판정부는 다수의 사건을 동시에 병행적으로 심리하는 법원과 달리, 대개 하나의 사건을 집중심리한다.⁶⁸⁾ 이러한 절차적 특징에 기반하여, 인터랙티브 중재규칙은 동규칙 43조에서 규정하는 중재판정 기간 및 심리에정표 작성 후 신속하고 원활한 중재절차 진행을 위하여 중재판정부와 당사자 간의 1단계 대화로 동규칙 제48조의 사실, 주장, 쟁점의 정리 조항을 규정하고, 2단계 대화로 동규칙 제56조에 중재판정부의 잠정적인 심증 제시 조항을 규정한다. 이 두 단계의 중재판정부와 양 당사자 간의 대화는 인터랙티브 중재절차의 큰 특징이다.⁶⁹⁾

2) 1단계 쟁점의 정리

인터랙티브 중재규칙 제48조는 중재판정부에게 가능한 빠른 단계에서 당사자의 청구에 관한 사실 및 법률상 근거에 대한 주장을 정리하여 이를 전제로 하여 도출한 잠정적인 사실 및 법률상 쟁점을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제시하여 기한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의 의견을 참고하여 쟁점을 수정할 수 있다. 쟁점의 정리는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정확성 및 신중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⁷⁰⁾ 쟁점정리는 중재판정부와 당사자 간에 정보교환 과정에서 정보를 정리하고 사안을 해명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공통의 인식을 형성하여 상호간에 명확하게 쟁점을 인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⁷¹⁾ 일반적으로 국내 조정의 경우 중재조항이 포함된 계약상의 분쟁을 대상으로 하므로 쟁점 정리가 용이하나, 국제중재는

65) 원문은 다음 웹사이트 참조. JCAA, インタラクティブ仲裁規則 2021, https://www.jcaa.or.jp/common/pdf/arbitration/Interactive_Arbitration_Rules2021_jp.pdf?211223 (2022. 4. 28. 최종방문).

66) 柏木 昇, “インタラクティブ仲裁規則と仲裁廷の暫定的な考え方の提示について”, JCAジャーナル 第66巻6号(2019. 6.) 3頁.

67) 김영주, 앞의 글, 143면.

68) 伊藤 眞, “紛争解決制度としての仲裁の機能向上とインタラクティブ仲裁規則2019—仲裁廷の心証開示を中心として”, JCAジャーナル 第66巻7号(2019. 7.) 4頁.

69) 柏木 昇, 앞의 글, 3頁; 伊藤 眞, 앞의 글, 4頁.

70) 伊藤 眞, 앞의 글, 5頁.

71) 加藤 新太郎, “裁判實務からみた「インタラクティブ仲裁規則」の評価”, 「JCAジャーナル」 67巻 3号 (2020. 3.), 5頁.

준거법이 외국의 법률인 경우 쟁점이 복잡해질 수 있으며, 쟁점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IBA 국제중재증거조사규칙에 의하여 문서제출명령 등을 이용하는 경우 심리가 장기화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쟁점을 정리할 실익이 크다.⁷²⁾

3) 2단계 잠정적인 심증 제시

인터랙티브 중재규칙 제56조는 중재판정부에게 효율적인 절차진행을 위하여 증인신문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①중재판정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실상의 쟁점 및 이에 대한 잠정적인 생각, ②중재판정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법률상의 쟁점 및 이에 대한 잠정적인 생각, ③기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을 정리하여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제시하도록 규정한다. 중재판정부는 기한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당사자는 서면에 의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중재판정부는 제출된 당사자 의견을 고려하여 증인신문을 행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중재판정부가 제시하는 생각은 잠정적인 것으로 중재판정부가 판단을 구속하지 않으며, 당사자는 중재판정부가 제시한 생각을 근거로 당해 중재인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없다. 이는 전통적으로 심증제시에 소극적인 민사소송과는 다른 규정으로, 재판부의 심증을 제시하지 않은 채로 당사자 간에 화해를 원하는 것이 사법신뢰를 저해한다는 반성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⁷³⁾

4) 기대와 비판적 시각

인터랙티브 중재규칙은 중재판정부의 의중을 모르는 상태에서 불필요한 쟁점이 모두 상정되어 중재절차가 장기화되어 결국 중재비용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차단하고자 하는 시도의 일환으로 보인다.⁷⁴⁾ 중재판정부의 잠정적인 심증제시와 이에 대한 당사자의 반론에 의하여 필요한 쟁점에 집중하여 효율적으로 절차를 진행하면서도 실질적으로 2심제에 가까운 효과가 기대되고,⁷⁵⁾ 조기에 중재판정부의 심증이 제시되면서 중재절차에서의 당사자 간 화해 또는 조정에 의한 화해가 성립할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이점이 존재한다.⁷⁶⁾ 이러한 형태는 대륙법계의 규문주의에 더 근접한 것으로, 중재인의 적극적인 절차관리가 전제되므로 영미법계 법률가보다는 대륙법계 법률가들에게 익숙한 형태로 보인다.⁷⁷⁾

영미법계 대리인이나 중재인에게는 낯선 규칙이므로 인터랙티브 중재규칙은 대리인과 중재인이 모두 대륙법계인 경우로 이용이 한정될 것으로 보이며, 이용에 대한 한계 외에도 중재판정부의 잠정적인 심증의 제시가 실효적인지, 즉 중재판정부가 자신이 제시한 심

72) 井原 一雄, “利用者からみた「インタラクティブ仲裁規則」”, 『JCAジャーナル』, 66卷 5号 (2019), 5頁.

73) 伊藤 眞, 앞의 글, 6頁.

74) 柏木 昇, 앞의 글, 4頁.

75) 柏木 昇, 앞의 글, 4頁; 井原 一雄, 앞의 글, 6頁.

76) 柏木 昇, 앞의 글, 5頁.

77) 柏木 昇, 앞의 글, 5頁.

중에 고착할 가능성 또는 당사자가 제한된 기간 내에 중재판정부의 심증에 반박이 가능한 지에 대한 지적이 존재한다.⁷⁸⁾ 이러한 한계로 인하여 인터랙티브 중재규칙은 결국 중재절차에서 당사자 간의 화해를 촉진하여 조기에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도 가능하다.⁷⁹⁾

3. JCAA 상사조정규칙의 주요내용

2020년 개정된 JCAA 상사조정규칙은 이전의 상사조정규칙을 개정하면서 국제상사조정규칙을 폐지하여 상사조정에 관한 조정규칙을 하나로 통합하였다.⁸⁰⁾ 이 개정은 2018년 싱가포르협약이 채택된 후, 국제상사분쟁을 조정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국제적 움직임이 일어나자 이에 대응하여 국제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⁸¹⁾ 개정된 상사조정규칙은 조정인 수의 선택, 조정절차 진행방식, 조정인 보수의 계산방법 등 조정절차의 주요사항에 대한 당사자의 선택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명시하고, UNCITRAL 모델조정법을 참조로 그 절차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싱가포르협약 체결국에서 JCAA의 조정절차를 통하여 성립한 화해합의가 집행가능하도록 JCAA 조정을 통하여 성립한 합의문의 작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한 것이 특징이다.⁸²⁾ 이 규칙은 상사조정규칙을 하나로 통합하면서 외국의 조정기관 규칙들을 참조하여 국제기준에 부합하여 외국 당사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여 이용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⁸³⁾

IV. 일본 중재법 개정에 관한 요강안의 주요내용

1. 중재법 개정에 관한 요강안의 준비과정 및 배경

일본 중재법은 1985년 UNCITRAL 모델중재법에 준거하여 2003년 제정, 2004년 시행⁸⁴⁾ 되었으나, 2006년 개정된 모델중재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⁸⁵⁾ 2006년 모델법에서 개정

78) 井原 一雄, 앞의 글, 7頁.

79) 井原 一雄, 앞의 글, 8頁.

80) 草野 芳郎, “新JCAA商事調停規則の評価”, JCAジャーナル 第68卷5号(2021. 5.) 3頁

81) 齋藤 彰, “JCAAの商事調停規則改正とその背景”, 「JCAジャーナル」 67卷 4号 (2020. 4.), 9頁; 草野 芳郎, 앞의 글, 3頁.

82) JCAA, 商事調停規則 (2020), <https://www.jcaa.or.jp/mediation/rules.html> (2022. 4. 24. 최종방문).

83) 草野 芳郎, 앞의 글, 4頁.

84) 日本 仲裁法 (平成十五年法律第三十八号). 원문은 다음 웹페이지 참조. E-GOV 法令檢索, 仲裁法, <https://elaws.e-gov.go.jp/document?lawid=415AC0000000138> (2022. 3. 11. 최종방문).

된 중재인이 명령한 임시적 처분에의 집행력 부여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중재법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일본에서는 공익사단법인 상사법무연구회의 ‘중재법제의 검토를 중심으로 한 연구회’가 2020. 7. 중재법 개정을 염두에 둔 연구회 보고서를 공표하였다.⁸⁶⁾ 법무성 법제심의회의 중재법제부회는 2020. 10.부터 심의를 개시하여 2021. 3.에 ‘중재법 등의 개정’에 관한 중간시안’을 공표하였으며,⁸⁷⁾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을 거친 후 일부 수정하여 2021. 10. 8. ‘중재법의 개정’에 관한 요강안’을 확정하여 2021. 10. 21. 법무대신에게 이를 제출하였다.⁸⁸⁾ 그 주요내용은 크게 2016년 UNCITRAL 모델법상의 임시적 처분제도의 도입, 중재합의 서면성 완화 등의 도입을 통한 국제기준에의 부응과 중재관계사건절차에 관한 규율의 간명화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위 요강을 근거로 한 법안화 작업이 진행 중이며, 2022. 국회에서의 개정중재법 가결이 예상된다.⁸⁹⁾

한편, 2020. 7. 발표된 연구회 보고서는 조정절차로 도출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대한 집행력부여 방안에 대한 논의도 포함하였다. 이는 2018년 싱가포르협약 채택에 대응하여 중재법 개정과 관련한 논점의 하나로 조정에 의한 합의문의 집행력 부여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는 공감대에 의한 것이었고, 연구회 보고서는 법원에 의한 집행결정절차 또는 사후적인 집행거부사유 통제에 의하여 일본 법제와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집행권원으로 조정에 의한 합의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싱가포르협약 서명에 긍정적인 결론을 도출하였다.⁹⁰⁾ 위 연구회 보고서의 결론을 이어받아, 중간시안은 중재법에 조정에 의한 화해합의의 집행결정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안하였다.⁹¹⁾ 이 부분에 대하여 일본변호사연합회는 대체적으로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다.⁹²⁾ 다만 조정에 의한 화해합의의 집행에 관한 부분은 중재법 개정’에 관한 요강안에서 분리되어 추가적인 중재법제부회의 심의를 거쳐, 2022. 2. ‘조정에 의한 화해합의에 집행력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의 창설 등에 관한 요강안(調停による和解合意に執行力を付与し得る制度の創設等に関する要綱案)’⁹³⁾을 확정하

85) 2003년 일본 중재법개정안 검토에 대하여 다음 웹사이트 참조. 首相官邸, 司法制度改革推進本部事務局, 仲裁検討會 (第13回) 議事録, <https://www.kantei.go.jp/jp/singi/sihou/kentoukai/tyuusai/dai13/13gijiroku.html> (2022. 3. 10. 최종방문).

86) 商事法務(編), 「仲裁法制の見直しを中心とした研究会報告書」, 商事法務(別冊 NBL/No. 172), 2020 (이하 ‘연구회 보고서’로 인용한다).

87) 商事法務(編集), 「仲裁法等の改正に関する中間試案」, 商事法務(別冊 NBL/No. 176), 2021 (이하 ‘중간시안’으로 인용한다).

88) 法務省, 「仲裁法の改正に関する要綱案」(令和3年10月8日決定), https://www.moj.go.jp/shingi1/shingi04900001_00103.html (2022. 3. 11. 최종방문).

89) ゾンデルホフ&アインゼル法律特許事務所, 法務: 仲裁法改正に向けた動き~仲裁法改正要綱の答申<https://se1910.com/ja/%E6%B3%95%E5%8B%99%E5%BC%9A%E4%BB%B2%E8%A3%81%E6%B3%95%E6%94%B9%E6%AD%A3%E3%81%AB%E5%90%91%E3%81%91%E3%81%9F%E5%8B%95%E3%81%8D%E5%BD%9E%E4%BB%B2%E8%A3%81%E6%B3%95%E6%94%B9%E6%AD%A3%E8%A6%81%E7%B6%B1/> (2022. 3. 12. 최종방문).

90) 岡田春夫, ODR 推進検討會 -ADRを巡る近年の國際的動向について-, (2020. 10. 28.), <https://www.moj.go.jp/content/001334620.pdf>

91) 중간시안, 38-39면.

92) 일본변협의견서, 15면 이하 참조.

93) 法務省, 調停による和解合意に執行力を付与し得る制度の創設等に関する要綱案,

었다.⁹⁴⁾ 아래에서는 중재법 개정에 관한 요강안을 중심으로 중간시안에서 논의를 거쳐 수정한 내용과 UNCITRAL 모델법과 우리 중재법과 비교하며 그 내용을 살피고자 한다.

2. 임시적 처분(暫定保全措置)의 도입

(1) 요강안에 제시된 임시적 처분에 관한 규정

요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임시적 처분의 도입으로, 임시적 처분 도입의 필요성은 첫째로 채권자가 이용 가능한 절차의 선택지를 추가하여 채권자의 권리보호를 도모하고, 둘째로 국제중재 활성화 관점에서 2006년 모델중재법 이후 대다수의 나라에서 시행 중인 임시적 처분의 집행을 일본에서도 보장함으로써 일본을 중재지로 하는 중재합의를 촉진하는 것이다.⁹⁵⁾ 또한 절차 정합성 측면에서도, 중재판정에 의한 임시적 처분은 중재합의가 존재하고 그 중재합의에서 임시적 처분이 배제되지 않았을 것을 전제하므로 임시적 처분의 집행은 일본의 집행제도와 충돌하지 않고, 당사자에게도 예측 불가능한 위험을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인정될 수 있다.⁹⁶⁾ 중재법 개정에 관한 요강안에 포함된 임시적 처분(暫定保全措置)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이 총 5개 조항으로, 조항별 내용은 아래와 같다.⁹⁷⁾

(2) 임시적 처분의 의의와 요건

요강안 제1 임시적 처분에 관한 규율의 제1조는 임시적 처분의 의의와 요건에 관하여 규정한다. 이에 의하면, 중재판정부는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에 중재판정이 내려지기 전에 어느 한쪽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고, 신청하는 당사자는 보전이 필요한 권리 등 그 신청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요강안에서 제시한 임시적 처분의 요건은 아래와 같다.⁹⁸⁾

-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을 때, 또는 강제집행을 함에 있어서 현저한 곤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금전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의 처분 기타 변경을 금지할 것
- ② 재상상의 급부(금전 지급을 제외함)을 구하는 권리에 대하여, 당해 권리를 실행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당해권리를 실행함에 있어서 현저히 곤란해질 우려가

<https://www.moj.go.jp/content/001366234.pdf> (2022. 4. 28. 최종방문).

94) 法務省, 法制審議會—仲裁法制部會, https://www.moj.go.jp/shingi1/housei02_003006.html (2022. 4. 28. 최종방문).

95) 연구회보고서 16-17면.

96) 위의 글, 22-23면.

97) 중재법 개정요강안의 원문 출처는 다음 웹사이트 참조. 法務省, 法制審議會第192回會議配布資料, 仲裁法の改正に關する要綱案, <https://www.moj.go.jp/content/001358284.pdf> (2022. 3. 11. 최종방문).

98) 要綱案 第1 暫定保全措置に關する規律, 1 暫定保全措置の定義(類型)及び發令要件 (1) ア~オ.

-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급부의 목적인 재산의 처분 기타 변경을 금지할 것
- ③ 분쟁의 대상이 되는 물건 또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신청을 한 당사자에게 발생하는 현저한 손해 또는 급박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당해손해 또는 당해위험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그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변경된 당해물건 또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변경 전으로 원상회복을 할 것
 - ④ 중재절차의 심리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할 것(⑤에서 열거하는 경우를 제외함)
 - ⑤ 중재절차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증거를 폐기, 소거, 변경 기타 행위를 금지할 것

위와 같은 규정은 우리 중재법 제18조와 제18조의2에 해당하는 규정으로,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어느 한쪽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중재판정부가 임시적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주요 내용은 같다. 그러나 우리 중재법은 2006년 모델중재법의 규정을 그대로 수용하여 임시적 처분의 유형 4개를 열거하고(우리 중재법 제18조 제2항 제1호-4호), 임시적 처분의 요건으로 임시적 처분의 신청 당사자가 임시적 처분을 받지 못하는 경우 보상되지 않는 손해와 본안의 인용가능성 등을 소명하도록 규정함(동법 제18조의2 제1항)에 반하여, 일본 요강안은 집행지인 일본의 민사집행법의 집행 수월성을 고려하여, 임시적 처분의 유형을 민사집행법의 보전처분의 유형구분에 따라 금전과 비금전 집행 등으로 나누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신청 당사자의 소명도 민사집행법상 보전절차와 유사하게 규정하였다.⁹⁹⁾

(3) 임시적 처분의 담보

요강안은 임시적 처분의 담보에 대하여, 일본 중재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을 ‘중재판정부는 임시적 처분을 내리는 경우 필요한 경우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의 문구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¹⁰⁰⁾ 이는 우리 중재법 제18조의4와 모델중재법 제17조의E의 규정과 유사하다.

(4) 임시적 처분의 취소 및 사정변경의 고지의무

요강안은 임시적 처분의 위소 및 사정변경의 고지의무에 대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¹⁰¹⁾ 이에 의하면, 보전해야할 권리 또는 권리관계 또는 임시적 처분의 신청의 기초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거나 신청의 기초가 되는 사정이 없어지게 되는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신청에 의하여 임시적 처분을 취소, 변경, 또는 그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중재판정부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미리 통지

99) 중간시안, 39면.

100) 要綱案 第1 暫定保全措置に關する規律, 2. 暫定保全措置命令の担保

101) 要綱案 第1 暫定保全措置に關する規律, 3 暫定保全措置命令の取消し等及び事情變更の開示命令

하고, 직권으로 임시적 처분을 취소, 변경,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는 경우 당사자에게 신속하게 당해 사정의 변경의 유무 또는 당해사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알릴 것을 명할 수 있다. 임시적 처분의 신청 당사자가 위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사정변경이 있는 것으로 본다.

위 내용은 우리 중재법 우리 중재법 제18조의3과 제18조의5에 상응하는 내용이나, 두 가지 점에서 차이가 난다. 우선 우리 중재법은 임시적 처분의 변경, 정지, 취소 전에 중재판정부에게 당사자를 심문하도록 하여(우리 중재법 제18조의3) 당사자의 적법절차를 더 중시한 반면, 요강안은 모델중재법 제17조의D와 마찬가지로 당사자에 대한 통지만 규정하고 당사자심문을 필수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절차의 신속성을 강조하였다.¹⁰²⁾ 또한 요강안은 우리 중재법과 모델중재법 제17조의F와 달리 중재판정부가 당사자에게 사정변경을 알리도록 명하는 경우 당사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정변경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중재판정부의 판단권한을 넓혀서 신속하게 임시적 처분의 취소, 변경, 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5) 임시적 처분의 손해배상

요강안은 ‘중재판정부가 임시적 처분을 취소, 변경, 정지함에 있어서, 당사자 간의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임시적 처분의 신청인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여 임시적 처분을 내렸다고 인정할 경우에 중재판정부는 임시적 처분의 피신청인의 신청에 의하여 임시적 처분의 신청인을 대상으로 임시적 처분의 피신청인이 받은 손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¹⁰³⁾ 또한 이러한 명령은 중재판정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이는 우리 중재법 제18조의 6이 모델중재법 제17조의G 비용 및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에 상응하나, 세부적인 내용에서 수정을 가하였다. 우선 임시적 처분의 손해배상 요건에 대하여, 우리 중재법이 ‘중재판정부가 임시적 처분을 내린 후 해당 임시적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임시적 처분을 신청한 당사자는 임시적 처분으로 인한 비용이나 손해를 상대방 당사자에게 지급하거나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우리 중재법 제18조의6 제1항), 요강안은 임시적 처분의 손해배상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예측가능성을 담보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손해배상에 대하여 우리 중재법은 중재판정부는 손해배상을 중재판정의 형식으로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동조 제2항)과 달리, 요강안은 중재판정부의 손해배상 명령은 중재판정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손해배상명령의 집행을 도모한 것으로 보인다.

102) 연구회보고서, 53-54면 참조.

103) 要綱案 第1 暫定保全措置に關する規律, 4 暫定保全措置命令に係る損害賠償命令.

(6) 임시적 처분의 집행

우리 중재법은 모델 중재법 17조의H를 수용하여 2016년 임시적 처분의 승인 및 집행에 대한 제18조의7를 신설하여 그 내용이 유사하다. 다만 모델법에서는 ‘임시적 처분의 중재지를 불문하고’ 임시적 처분의 승인 및 집행을 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우리 중재법은 이를 제외하였고(제18조의7 제1항), 임시적 처분의 집행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중 보전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여 집행방법을 제시하였다(동조 제4항). 또한 승인 및 집행의 거부사유에 대하여도 모델중재법 17조의I 규정을 거의 그대로 수용하면서 승인 및 집행 거부사유에 대하여 임시적 처분의 상대방 당사자가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나 임시적 처분이 중재합의를 벗어난 경우 등을 추가하고, 증명의 정도를 소명으로 하였다(제18조의8 제1항 제1호 가목). 반면 일본 중재법 개정에 관한 요강안은 임시적 처분이 외국 중재판정부인 경우를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국제중재 활성화를 염두에 두었고,¹⁰⁴⁾ 임시적 처분의 집행을 상세히 규정하여 국제사건의 외국인 대리인이 중재법 내용을 보고 집행절차와 관할법원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절차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하였고, 증명의 정도를 임시적 처분의 경우에도 소명이 아닌 증명으로 통일하였다.

1) 임시적 처분의 승인 및 집행과 거부사유¹⁰⁵⁾

i) 임시적 처분의 승인 및 집행 절차 및 관할 등

요강안은 ‘임시적 처분(중재지가 일본인지 여부는 불문한다.)을 신청한 자는 당해 임시적 처분 명령을 받은 자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법원에 임시적 처분 중 분쟁 대상에 대한 위험발생 방지 또는 변경 전 원상회복 조치 또는 재산의 처분·변경 금지 등에 대한 결정(이하 집행 등 결정(執行等認可決定)이라 한다)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신청을 하려는 경우 임시적 처분의 명령서의 사본, 당해 사본의 내용이 임시적 처분 명령의 명령서와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 임시적 처분명령의 명령서(일본어로 작성된 것을 제외한다)의 일본어 번역문을 제출해야 하나, 법원은 일본어 번역문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출을 생략하도록 할 수 있다고 하여 아래 중재 관련 소송절차 정비에서의 번역문 생략 규정과 통일성을 도모하였다.

요강안은 임시적 처분의 취소 등이 있는 경우의 집행절차 중지와 그 관할기관을 규정하여 임시적 처분의 취소 등이 있는 경우에도 안정적이고 신속하고 후속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위 신청을 받은 법원은 중재판정부 또는 재판기관(중재지가 속하는 국가의 법령(당해 임시적 처분에 적용된 법령이 중재지가 속하는 국가 이외의 국가의 법령인 경우에는 적용 법령)에 의하여 당해국의 재판기관이 그 권한을 가지는 경우에 한정

104) 중간시안, 53면.

105) 要綱案 第1 暫定保全措置に關する規律, 5 暫定保全措置命令の執行 (1) 暫定保全措置命令の執行等認可決定

함)에 대하여 임시적 처분명령의 취소, 변경 또는 그 효력의 정지를 구하는 신청이 있던 것을 알았던 경우에 한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집행 등 결정에 관한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 경우 법원은 집행 등 결정의 신청인의 신청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요강안은 임시적 처분의 집행에 대한 사건으로 다음에 열거하는 법원의 전속관할로 함을 규정한다.

- ① 중재법 제5조 제1항 각호에서 열거한 법원
- ② 청구 목적 또는 압류 가능한 피신청인의 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 ③ 도쿄지방법원(東京地方裁判所) 또는 오사카지방법원(大阪地方裁判所)(중재지, 피신청인의 보통재판적의 소재지 또는 청구 목적 또는 압류 가능한 피신청인의 재산 소재지가 일본 내에 있는 경우에 한정함).

위 조항은 아래 중재 관련 소송절차 정비의 관할법원 요건과의 조화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요강안은 위 신청에 관한 사건의 이송의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하여 신속성을 담보하였다.

ii) 집행거부사유

요강안에 의하면, 법원은 집행 등 결정 신청이 있는 경우 규정에 의하여 그 신청을 각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집행 등 결정을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법원은 위 신청이 있는 경우에 아래 열거사항의 어느 하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①에서 ⑧까지의 사유는 피신청인이 당해 사유의 존재를 증명(証明)한 경우에 한함)에 한하여 당해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 ① 중재합의가 당사자의 행위능력 제한으로 그 효력이 없는 경우
- ② 중재합의가 당사자들이 합의로 중재합의에 적용된다고 지정한 법령(당해 지정이 없는 경우 중재지가 속하는 국가의 법령)에 의하여 당사자의 행위능력 제한 외의 사유로 그 효력이 없는 경우
- ③ 당사자가 중재인 선정 또는 중재절차 (임시적 처분에 관한 부분에 한함. ④-⑥도 동일함)에 관하여 중재지가 속하는 국가의 법령의 규정(그 법령의 공공질서에 관한 규정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합의)에 의하여 필요한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 ④ 당사자가 중재절차에 관하여 방어할 수 없었던 경우

- ⑤ 임시적 처분이 중재합의 또는 임시적 처분에 관한 별도의 합의 또는 임시적 처분의 신청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에 대하여 나온 경우
- ⑥ 중재판정부의 구성 또는 중재절차가 중재지가 속하는 국가의 법령 규정(그 법령의 공공질서에 관한 것이 아닌 규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합의)에 위반하는 경우
- ⑦ 중재판정부가 임시적 처분의 신청인에 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한 경우, 그 사람이 당해명령에 위반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 ⑧ 임시적 처분명령이 중재판정부 또는 규정된 재판기관에 의하여 취소, 변경, 정지된 경우
- ⑨ 중재절차에 관한 신청이 일본 법령에 의하여 중재합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분쟁에 관한 것인 경우
- ⑩ 임시적 처분명령의 내용이 일본의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

다만 위 ⑤의 경우 당해 임시적 처분명령이 그 합의의 대상에 관한 부분과 대상이 아닌 부분으로 분리될 수 있는 경우에는 분리된 부분을 각 독립한 임시적 처분으로 보아 위 규정을 적용하게 된다. 집행 등 결정은 확정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하며, 법원은 구두 변론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 연 후 결정하고, 법원의 위 결정에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부분은 국제중재에서 일본의 중재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 대리인을 염두에 두고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2) 임시적 처분에 의한 민사집행¹⁰⁶⁾

요강안은 분쟁의 대상이 되는 물건 또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신청 당사자에게 발생하는 현저한 손해 또는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당해 손해 또는 당해 위험의 발생을 저지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변경이 생긴 당해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변경 전의 원상회복을 구하는 임시적 처분은 그 집행결정이 있는 경우 민사집행이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3) 임시적 처분의 위반금지명령¹⁰⁷⁾

요강안은 임시적 처분에 관한 위반금 지급명령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한다. 법원은 분쟁의 대상이 되는 물건 또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신청한 당사자에게 발생하는 현저한 손해 또는 급박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당해 손해 또는 당해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106) 要綱案 第1 暫定保全措置に關する規律, 5 暫定保全措置命令の執行 (2) 暫定保全措置命令に基づく民事執行
 107) 要綱案 第1 暫定保全措置に關する規律, 5 暫定保全措置命令の執行 (3) 暫定保全措置命令に係る違反金支拂命令

그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변경된 당해 물건 또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변경 전으로 원상회복을 할 것을 명하는 것이 아닌 임시적 처분에 대하여 확정된 집행결정이 있는 경우, 당해 임시적 처분을 받은 사람(피신청인)이 이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염려가 있는 경우, 당해 임시적 처분을 신청한 사람의 신청에 의하여 당해 임시적 처분의 위반으로 손해를 받은 이익의 내용, 성질 또는 손해의 양상 및 정도를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전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위 규정의 금전지급명령(위반금지급명령)을 집행결정과 동시에 할 수 있고, 이 경우 위반금지급명령은 집행 등 결정이 확정될때까지는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이 규정하여 절차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였다. 위반금지급명령 신청에 관한 사건은 집행결정을 한 법원 등의 관할에 진속한 것으로 보고, 법원은 위반금지급명령과 집행결정을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집행결정을 취소하는 재판이 확정되거나 금전지급에 관한 임시적 처분의 집행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위반금지급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위반금지급명령은 확정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하며, 위반금지급명령에 의한 금전지급이 있는 경우 임시적 처분의 위반에 의한 손해액이 지급액을 초과하는 경우 임시적 처분을 신청한 사람은 그 초과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었다. 위반금지급명령이 나온 후에 중재판정부 또는 관할권 있는 재판기관에 의하여 임시적 처분이 취소, 변경, 정지된 경우에 법원은 피신청인의 신청에 의하여 위반금지급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3. 중재합의 서면성 요건의 완화

요강안에서 두 번째로 제시한 개정내용은 중재합의 서면성의 요건을 규정한다.¹⁰⁸⁾ 일본 현행 중재법 제13조 제2항은 중재절차의 핵심인 중재합의의 서면성을 규정하고 있으나, 2006년 모델중재법 제7조의 서면성 완화(제1안) 또는 서면성 요건 철폐(제2안)를 반영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하여 중간시안은 모델중재법의 제1안을 그대로 수용하여 중재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하였으나,¹⁰⁹⁾ 요강안에서는 수정을 기하였다. 이에 의하여, 일본 중재법 제13조는 ‘서면에 의하지 않은 계약에 있어서, 중재합의를 내용으로 하는 조항이 기재되거나, 기록된 문서 또는 전자적 기록이 당해계약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인용된 경우에는 그 중재합의는 서면에 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문구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¹¹⁰⁾

108) 要綱案 第2 仲裁合意の書面性に關する規律

109) 중간시안, 60-61면.

110) 要綱案 第2 仲裁合意の書面性に關する規律

仲裁法第13條に, 次のような規律を設けるものとする。

書面によらないでされた契約において, 仲裁合意を内容とする條項が記載され, 又は記録された文書又は電磁的記録が当該契約の一部を構成するものとして引用されているときは, その仲裁合意は, 書面によってされたものとみなす。

4. 중재 관련 소송절차의 정비

(1) 소송절차에 관한 규율의 개관

일본을 중재지로 하는 국제중재의 활성화를 위하여는 중재절차뿐만 아니라 중재판정의 취소 등에서 중재지 법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전제로 중재판정의 취소 등 중재 관련 사건의 절차를 정비하여 이용자가 편리하게 절차에 임할 수 있도록 절차를 정비할 필요가 대두되었다. 중재는 당사자자치에 기초한 분쟁해결제도로 법원은 중재절차의 신속하고 원활한 진행을 돕게 되며, 법원의 이러한 역할은 국제중재지로서 일본을 고려하는 요소의 하나가 될 수 있다.¹¹¹⁾ 그러나 국제중재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축적되지 못한 지방법원이나 국제중재의 피신청인이 일본에 주소, 사무소, 영업소 등을 두지 않아 관할법원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를 상정하여 적정, 신속, 안정적인 재판을 위하여 국제중재 경험이 풍부하고 외국어 대응능력이 있으며, 외국으로부터의 접근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도쿄와 오사카의 지방법원을 경합관할로 추가할 것을 일본변호사협회는 제안하였다.¹¹²⁾ 이러한 의견을 수용하여 요강안은 중간시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다음과 같이 중재관련 사건절차의 관할, 중재관계사건절차의 이송, 외국어자료의 번역첨부 생략 등을 소송절차 규율의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¹¹³⁾

(2) 중재관련 사건절차의 관할

일본 현행 중재법 제5조 제1항은 법원이 행하는 사건의 관할로 합의관할, 중재지, 피신청인의 보통재판적 중의 하나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있다고 규정한다. 또한 동법 제35조 제3항 제2호에서 법원에 의한 증거조사의 경우 심문을 받을 사람 또는 문서소지자의 주소·거소, 또는 검증의 목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관할이 있다고 규정하고, 중재판정에 의한 민사집행결정 절차는 위 중재법 제5조 제1항의 지방법원 외에 청구의 목적 또는 압류할 수 있는 채무자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도 관할을 인정한다(동법 제46조 제4항). 그러나 이러한 조항은 국제중재의 피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관할을 정하기 어렵고, 이용이 어려워 절차가 지연되고 국제중재에 대한 경험이 전무한 지방법원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¹¹⁴⁾ 이러한 점에서 중간시안은 중재법 제5조에 ‘중재지가 일본국내에 있는 경우에 있어서 최고재판소규칙에서 정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라는 내용을 신설하도록 하고, 고등법원 소재지 관할구역 내

111) 日本弁護士連合會, 仲裁法等の改正に關する中間試案に對する意見書(2021年(令和3年)4月15日), 10, <https://www.nichibenren.or.jp/library/pdf/document/opinion/2021/210415.pdf> (2022. 3. 12. 최종방문) (이하 ‘일본변협 의견서’라 한다).

112) 일본변협 의견서, 11면.

113) 要綱案 第3 仲裁關係事件手續に關する規律

114) 일본변협 의견서, 11면.

에 소재하는 지방법원에도 관할을 인정하는 내용을 신설하였다.¹¹⁵⁾

이에 대하여 일본변호사연합회는 사건처리의 적정·신속·안정, 일본의 국제중재 활성화, 중재절차 당사자의 부담 경감, 중재절차 당사자의 재판절차 접근성 보장 등의 관점에서 중재절차에 대한 전문적 이해를 바탕으로 재판절차 처리가 가능하며 외국어 대응능력이 있는 법원에서 중재 관련 사건을 집중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¹¹⁶⁾ 국제중재를 포함한 중재절차에 관한 재판절차는 중재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대부분의 중재절차가 실시되는 곳이 도쿄와 오사카라는 점, 그리고 전자소송화의 진전으로 원격지에 소재한 당사자의 부담이 경감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도쿄지방법원과 오사카지방법원을 집중관할법원으로 하며, 향후 진속관할화도 검토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¹¹⁷⁾ 이러한 의견을 수용하여, 요강안은 중간시안에 제시된 내용을 수정하여, 중재지가 일본인 경우 도쿄지방법원 또는 오사카지방법원을 경합관할로 인정한다는 규정을 제시하였다.¹¹⁸⁾ 즉 일본을 중재지로 한다는 합의가 있으면 중재지가 도쿄나 오사카가 아닌 교토 등이라고 하더라도 동경이나 오사카에서의 관할이 긍정된다. 이는 도쿄와 오사카지방법원의 국제중재 전문성을 향상하고 판단의 안정성, 통일화를 촉진하여 국제분쟁해결에 적합한 중재지로서의 평가를 얻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¹¹⁹⁾

(3) 중재관련 절차의 이송

도쿄지방법원, 오사카지방법원 외의 관할법원에 신청한 경우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집중관할권을 가진 법원에의 이송을 가능하게 하여 절차의 신속·적정·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¹²⁰⁾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변호사연합회는 중재법 제5조 제3항에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신청 혹은 직권으로 사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안하였다.¹²¹⁾ 요강안은 법원은 중재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하는 사건에 대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 또는 직권으로 당해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권이 인정되지 않는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고, 중재법 제44조 제3항 및 제46조 제5항의 규정을 삭제하도록 하였다.¹²²⁾

115) 法務省, 仲裁法等の改正に関する中間試案のたたき台 (1), 仲裁法制部會資料 5-1, 10, <https://www.moj.go.jp/content/001341496.pdf> (2022. 4. 15. 최종방문).

116) 일본변협 의견서, 11면.

117) 일본변협 의견서, 13면.

118) 要綱案 第3, 1 仲裁關係事件手續における管轄

119) ゾンデルホフ&アインゼル法律特許事務所, 法務: 仲裁法改正に向けた動き~仲裁法改正要綱の答申<https://se1910.com/ja/%E6%B3%95%E5%8B%99%EF%BC%9A%E4%BB%B2%E8%A3%81%E6%B3%95%E6%94%B9%E6%AD%A3%E3%81%AB%E5%90%91%E3%81%91%E3%81%9F%E5%8B%95%E3%81%8D%EF%BD%9E%E4%BB%B2%E8%A3%81%E6%B3%95%E6%94%B9%E6%AD%A3%E8%A6%81%E7%B6%B1/> (2022. 3. 12. 최종방문).

120) 일본변협의견서, 13면.

121) 일본변협의견서, 13면.

(4) 중재관련 절차의 외국어자료 번역 첨부 생략

요강안은 중재판정의 집행결정 신청을 위한 중재판정서의 일본어번역본 제출과 외국에서 작성된 문서를 서증으로 제출하는 경우의 일본어 번역본의 제출에 대하여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¹²³⁾ 이는 신속한 절차진행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중재판정의 집행결정에 관한 일본 중재법 제46조 제2항은 ‘동조 제1항의 신청을 하는 경우 중재판정문의 사본, 당해 사본의 내용이 중재판정문과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 및 중재판정서(일본어로 작성된 것을 제외한다)의 일본어에 의한 번역문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신청인의 의견을 듣고 중재판정서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본어 번역문을 제출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로 개정하도록 하였다.¹²⁴⁾ 또한 법원은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를 제출하여 서증의 신청이 된 경우에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 의견을 듣고 그 문서의 번역본을 첨부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고 하였다.¹²⁵⁾

V. 시사점 및 결론

중재는 공권력에 의한 분쟁해결인 소송과 구분하여 사인에 의한 자주적인 분쟁해결절차로 분류가 된다. 중재는 소송과 달리 일반적으로 응소를 강제할 수 없으나, 중재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중재합의를 한 당사자에게 중재절차에 참여하도록 강제할 수 있고, 중재절차에서 양 당사자는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대등하게 주장을 하며, 중립적인 중재판정부의 판정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사적 소송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다만 중재는 소송과 달리 상소 등 불복절차가 없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중재지 법원의 중재판정 취소 또는 집행지 법원의 집행거부사유 심사 등 제한적인 사후통제만이 존재하고, 여러 사건을 동시에 심리하는 법원과 달리 중재판정부는 하나의 사건을 집중심리한다는 점에서 절차적으로 독특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¹²⁶⁾

집행 측면에서 중재는 뉴욕협약과 각국의 중재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등에 의하여 구속력과 집행력이 보장되며, 우리의 경우 중재판정은 집행결정과 결합하여 집행권원이 된다. 중재는 국제분쟁해결에서 소송이라는 국가 공권력에 의한 분쟁의 한계를 극복하기

122) 要綱案 第3, 2 仲裁關係事件手續における移送

123) 要綱案 第3, 3 仲裁關係事件手續における外國語資料の譯文添付の省略

124) 要綱案 第3, 3. (1) 仲裁判斷の執行決定の申立てにおける仲裁判斷書の日本語による翻譯文の提出の省略

125) 要綱案 第3, 3. (2) 外國語で作成された書証の翻譯文の添付の省略

126) 伊藤 眞, 앞의 글, 4頁 참조.

위하여 UN이 주도하여 발전시킨 제도로, 뉴욕협약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면서 뉴욕협약에 규정된 중재판정 거부사유에 내포된 적법절차 내지 절차적 공정성의 보장은 각국의 중재법에 반영되었고, UNCITRAL은 중재규칙과 모델중재법을 제정·개정하여 각국의 중재법 규정의 내용을 선도하였다. 그 결과 국제중재는 뉴욕협약이라는 거대한 체계 안에서 국제적으로 비교적 균일한 절차가 확립되었다. 이는 국제중재의 실무에서의 이용의 부담을 덜어주고, 절차진행의 예측가능성과 중재판정의 집행가능성을 담보하였고, 결과적으로 국제중재는 국가의 법원에서 소송을 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합리적인 대안으로 정착하였다. 근래에 국제상사중재의 장기화와 비용의 증가, 당사자 간의 원만한 분쟁해결의 필요성 등으로 인하여 국제조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국제중재는 여전히 국제분쟁해결의 주요한 수단이다.

분쟁해결절차는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담보하면서 평화로운 해결을 보장하므로 각국은 국제중재의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은 그간 국제중재 또는 국제조정 등의 이용이 저조하였으나, 최근 일본을 중재지로 하기 위한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중재절차를 국제적 수준으로 정비하기 위한 노력이 두드러졌으며, 민간영역에서는 JCAA 중재규칙의 제·개정이 이루어졌고, 일본의 국내 입법 영역에서는 중재법 개정작업이 이루어졌다. JCAA 중재규칙 개정에서 특기할 만한 점은 국제중재절차로의 표준화와 병행하여, JCAA 특유의 신속중재절차와 인터랙티브 중재규칙을 마련한 점이다. 이는 중재제도에 기대되는 특징, 즉 신속성과 유연성, 그리고 당사자자치의 존중을 반영하면서 대륙법계 법제의 특징을 살려 소송과 법원에서의 사법조정(judicial mediation)에 익숙한 법률가들에게 중재이용에 대한 저항감을 낮추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

한편, 일본 중재법 개정작업에서 특기할 만한 점으로는 우선 민사집행법 등을 고려하여 요건을 구체적으로 설정한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집행법원의 집행요건 심사를 원활하게 하여 집행절차의 신속성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일본의 민사법체계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 변호사가 대리인인 국제중재사건에서 중재법 규정만으로 집행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임시적 처분의 요건 등을 알 수 있게 하여 일본에서 중재를 하는 경우의 예측가능성과 절차적 안정성을 보장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특징은 중재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의 관할을 확대한 것이다. 관할 확대의 효과로 첫째, 국제중재사건에 대한 경험이 축적된 도쿄지방법원과 오사카지방법원의 관할을 확대하여 심리를 원활하게 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기대할 수 있다. 두 번째 효과로, 국제중재에서 대리인이 외국변호사인 경우 교통이 불편한 지방법원에서의 이동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국제공항에서 접근이 쉬운 도쿄지방법원과 오사카지방법원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사법접근성이 강화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또

한 중재사건이 법원에 제기된 경우의 관할, 이송 등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여 외국 대리인들에게 절차적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담보하였는데, 이는 일본이 향후 중재지로서의 위상을 향상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는 중재법 개정을 준비하면서 연구회 보고서와 중간시안에 조정에 의한 화해 합의에 대한 법제도마련을 함께 검토하여 국제중재와 국제조정을 연계하여 중재법, ADR 촉진법 등 관련 법제도를 함께 정비한 점이 특기할 만하다. 싱가포르협약의 주요 의의 중 하나는 국제상사분쟁에서 조정을 통하여 합의를 도출한 경우 각국에서 집행을 보장하는 것이다. 우리 법제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조정에서 도출한 당사자 간 합의에 집행력을 부여하지 않으므로, 싱가포르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별도의 법률이 필요하다. 중재와 조정이 함께 이용될 경우 및 싱가포르협약 비준 이후의 상황 등을 고려하면 우리도 국제분쟁해결 절차에서 중재법제와 조정법제 등 분쟁해결절차 전반을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갑유 등, 「중재실무강의」, 박영사, 2017
- 목영준·최승재, 「상사중재법」, 박영사, 2018
- 이호원, 「중재법연구」, 박영사, 2020
- 關戸 麥, 「わかりやすい國際仲裁の實務」, 商事法務(別冊 NBL/No. 167), 2019
- 商事法務(編集), 「仲裁法制の見直しを中心とした研究會報告書 [付・諸外國等における仲裁法制についての調査報告書]」, 商事法務(別冊 NBL/No. 172), 2020
- 商事法務(編集), 「仲裁法等の改正に関する中間試案」, 商事法務(別冊 NBL/No. 176), 2021
- Carlos Espluges & Louis Marquis (Ed.), 「New Developments in Civil and Commercial Mediation - Global Comparative Perspectives」, Springer, 2015
- 김상영, “일본의 ADR(대체적 분쟁해결) 기본법에 대한 검토”, 「법학연구」 제61권 제3호 (2020)
- 김영주, “2019년 일본상사중재협회(JCAA) 중재제도의 개혁동향”, 「중재연구」 제29권 제2호 (2019.)
- 김용섭, “민간조정 활성화를 위한 입법적 과제 - 독일과 일본의 법제도와 시사점을 중심으로-”, 「저스티스」 통권 제157호 (2016)
- 박철규, “ADR법 발전과정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미·영·독·불·일을 중심으로 -”, 「미국헌법연구」 제27권 제1호 (2016)
- 이로리, “지식재산권 분야의 국제상사조정제도와 활용 - WIPO조정을 중심으로”, 「중재연구」 제31권 제2호 (2021)
- 전병서, “국제중재 기반 구축과 진흥 - 추격자 입장인 일본 최신 동향의 소개를 겸하여 -”, 「민사소송」 제22권 제2호 (2018. 11.)
- 조수혜, “싱가포르 협약 이후의 조정합의문의 집행: 미국과 싱가포르의 조정합의문 집행제도와 시사점”, 「민사집행연구」 16권 (2020)
- 함영주, “싱가포르 조정제도의 현황과 시사점”, 「중앙법학」 제13집 제3호(2011. 9.)
- _____,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국가전략 수립: 싱가포르 협약 대응을 중심으로”, 국회입법조사처 정책연구 용역(2021. 11. 30)
- 加藤 新太郎, “裁判實務からみた「インタラクティブ仲裁規則」の評価”, 「JCA ジャーナル」 67卷 3号(2020)
- 柏木 昇, “インタラクティブ仲裁規則と仲裁廷の暫定的な考え方の提示について”, 「JCA ジャーナル」 66卷 6号 (2019)

- 草野 芳郎, “新JCAA商事調停規則の評価”, 『JCAジャーナル』 68巻 5号(2021)
- 齋藤 彰, “シンガポール条約の加盟に向けた日本の課題”, 『国際商取引學會年報』 22号(2020)
- 齋藤 彰, “JCAAの商事調停規則改正とその背景”, 『JCAジャーナル』 67巻 4号(2020. 4.)
- 中林 啓一, “シンガポール調停条約と国際私法”, 『修道法學』 43巻 2号(2021)
- 伊藤 眞, “紛争解決制度としての仲裁の機能向上とインタラクティブ仲裁規則2019 — 仲裁廷の心証開示を中心として”, 『JCAジャーナル』 66巻 7号(2019)
- 井原 一雄, “利用者からみた「インタラクティブ仲裁規則」”, 『JCAジャーナル』 66巻 5号(2019)
- 井原一雄, “JCAA新調停規則に対するコメント”, 『JCAジャーナル』 67巻 3号(2020)
- 秦 公正, “シンガポール調停条約の成立と日本の条約批准を見据えて”,
<https://yab.yomiuri.co.jp/adv/chuo/research/20210422.php>
- Christina G. Hioureas, *The Singapor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Settlement Agreements Resulting from Mediation: A New Way Forward?*, 37 Berkeley J. Int'l L. 215 (2019)
- Brian A. Pappas, *Med-Arb and the Legalization of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20 Harv. Negot. L. Rev. 157 (2015)

ABSTRACT

Efforts to Promote International Dispute Resolution under the regime of Singapore Mediation Convention in Japan: From the Perspective of Amendments to JCAA Arbitration Rules and Arbitration Act of Japan

Soo-Hye Cho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Settlement Agreements Resulting from Mediation (Singapore Mediation Convention) results in new challenges to the area of international dispute resolution by providing the enforcement regime for mediated settlement agreements, which have not been admitted as enforceable in some civil law countries, including Korea and Japan. Japan has struggled to promote international arbitration and international mediation, and such efforts were accelerated by the adoption of the Singapore Mediation Convention in 2018. In order to standardize arbitration proceedings and promote the practice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Japan produced two noticeable results: the new JCAA Arbitration Rules and the amendment to the Arbitration Act of Japan. In addition to that Expedited arbitration procedure and Interactive Arbitration Rules of JCAA present the new possibility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procedure for civil law practitioners, the amendment to the Arbitration Act of Japan suggests significant implications to Korea for its manifest provisions regarding enforcement requirements and proceedings and its protection of Access to Justice for foreign law practitioners.

Key Words : International Arbitration, International Mediation, Amendments to Arbitration Act of Japan, JCAA Expedited Procedure, JCAA Interactive Arbitration Rules